

인천대헌학교뒤·송림4구역 1블록(LH브리즈힐)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알선

본 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하는 인천대헌학교뒤·송림4구역 1블록(LH브리즈힐)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배정된 일부 세대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알선하여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시행사(LH)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공무원 특별공급 내역

- 위치 : 인천대헌학교뒤·송림4구역 1블록(LH브리즈힐)
- 공무원 특별공급 내역

지 역	공급유형	주택유형	배정세대수		입주 예정시기
			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	
인천대헌학교뒤· 송림4구역 1블록	공공분양	59A	1	1	'21년 6월
		59C	1	-	

※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조건

공급금액, 전매제한/재당첨 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은 아직 미정므로, 시행사인 LH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0. 4월 중 공고예정)에 따릅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알선 공고일('20.03.13.) 현재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제외)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주민등록등본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수급자.
※ 단,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자는 제외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1인 중복신청, 부부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 취소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알선대상자 선정기준 등

- 선정방법 : 공무원 특별공급 배정세대수보다 신청공무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알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순 위	대 상 자	비 고
1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 포함
3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무원연금수급자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신청자가 기재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재직기간**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알선대상자의 6배수를 심사

점수제 산정 기준

배점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배점기준	점수
계	100				
① 무주택 기간	35	1년 미만	0.5	8년 이상~9년 미만	18.9
		1년 이상~2년 미만	2.8	9년 이상~10년 미만	21.2
		2년 이상~3년 미만	5.1	10년 이상~11년 미만	23.5
		3년 이상~4년 미만	7.4	11년 이상~12년 미만	25.8
		4년 이상~5년 미만	9.7	12년 이상~13년 미만	28.1
		5년 이상~6년 미만	12.0	13년 이상~14년 미만	30.4
		6년 이상~7년 미만	14.3	14년 이상~15년 미만	32.7
		7년 이상~8년 미만	16.6	15년 이상	35.0
② 부양 가족수	30	0명(신청자 본인)	6	4명	22
		1명	10	5명	26
		2명	14	6명이상	30
		3명	18		
③ 공무원 재직기간	35	1년 미만	2	17년 이상~18년 미만	19
		1년 이상~2년 미만	3	18년 이상~19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4	19년 이상~20년 미만	21
		3년 이상~4년 미만	5	20년 이상~21년 미만	22
		4년 이상~5년 미만	6	21년 이상~22년 미만	23
		5년 이상~6년 미만	7	22년 이상~23년 미만	24
		6년 이상~7년 미만	8	23년 이상~24년 미만	25
		7년 이상~8년 미만	9	24년 이상~25년 미만	26
		8년 이상~9년 미만	10	25년 이상~26년 미만	27
		9년 이상~10년 미만	11	26년 이상~27년 미만	28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7년 이상~28년 미만	29
		11년 이상~12년 미만	13	28년 이상~29년 미만	30
		12년 이상~13년 미만	14	29년 이상~30년 미만	31
		13년 이상~14년 미만	15	30년 이상~31년 미만	32
		14년 이상~15년 미만	16	31년 이상~32년 미만	33
		15년 이상~16년 미만	17	32년 이상~33년 미만	34
16년 이상~17년 미만	18	33년 이상	35		

※ 동순위 동점자 처리

- ①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②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③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 ④ 생년월일이 빠른 자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접수

구 분	접수일시	참고사항
• 신청접수	2020. 03. 24. (화) 09:00 ~ 17:00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 ※ 접수기간 (2020. 03. 24. 09:00 ~ 17:00)내에 접수된 것만 신청접수 건으로 인정됩니다.
- ※ 접수기간 외에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 “특별공급알선 인터넷 신청매뉴얼” 참조

※ 반드시 '특별공급알선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숙지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알선(예비) 대상 예정자 통보 : 2020.03.25.(수) 13:00 이후 유선 개별통보(탈락자는 별도 통보 없음)

알선(예비)대상 예정자 공단 제출서류

■ 제출서류(인터넷 신청 접수 후, 알선-예비 대상 예정자로 선정되어 유선으로 통보한 자에 한함)

필수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공무원 본인 명의(배우자 명의 불가), 가입 6개월 경과 · 납입 6회 이상 - 통장의 첫장과 납입기록이 있는 마지막장 복사(계좌번호·가입자명·납입횟수 확인 필요) 2.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등재일 등이 모두 나오게 발급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3. 청약제한사항 조회 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가능 - 조회기준일은 특별공급알선 공고일임 (2020.03.13.)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만 19세 이상) 각 1부를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혼인관계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6.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 제출 7.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가급적 빠른등기 제출)

- 보낼 곳 : (우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4층 주택사업실(담당 : 박소영 주임)

■ 제출기한 : 2020.03.31.(화) 18:00 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다음 순위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 통보방법 : 유선 개별통보

※ 알선 및 예비대상자는 “알선 대상자 확인서 · 예비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확인서 제출 후에는 포기가 불가합니다.

■ 당첨자 시행사 최종 통보일 : 2020. 04. 22.(수) 예정

※ 알선 및 예비대상자로 결정된 후, 시행사 공급조건(신청자격, 청약 일정 및 계약체결 등)에 따라야함.

시행사 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0. 4월 중 (예정)	시행사 홈페이지 참고 (https://apply.lh.or.kr)
건본주택 개관	실물 건본주택 관람 불가	입주자모집공고 시 사이버 건본주택 인터넷주소 기재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0. 4월 중 (예정)	LH청약센터 인터넷 청약접수 (https://apply.lh.or.kr)
당첨자발표	미정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 (https://apply.lh.or.kr)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2020.03.24.(09:00~17:00)]후,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신 분께서는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LH청약센터 또는 LH 모바일앱에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전산관리지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 공고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1개의 주택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택 모두에 대해 무효로 처리합니다.
- 우리 공단의 임대주택(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거나 입주하였던 사실은 분양아파트 수혜로 보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나 선정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알선 및 예비대상자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요건 및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공단에서 주택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관리되어, 향후 우리 공단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공단 분양주택이나 특별공급알선 주택의 공급 순위가 2순위 또는 3순위로 변경됩니다.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어 특별공급 신청접수를 할 경우,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일반 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 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 제외)
- 당첨 통보 후 주택공급 기관의 청약자격 확인결과 제출서류 및 입력사항 등의 잘못이 확인되어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단될 경우 특별공급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우리 공단에서 특별공급 알선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 접수해야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공급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을 포함하여 해당 공무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소유 여부 판정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 2) 무주택기간은 신청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공무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신청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으로 한다. 다만, 신청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2) 신청공무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공무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이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알선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3) 신청공무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알선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본다.

♣ **공무원 재직기간 적용기준**

-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인터넷사이트 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제한사항확인' 조회)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등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
- 우리공단에서 과거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 후 분양) 알선대상자로 선정되어 시행사에 통보된 사실이 있는 자 (최종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사실이 있는 자)

♣ **우리공단 특별공급 및 알선대상자 선정근거**

-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제1항 제16호

■ 문의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구 분	시행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	· www.geps.or.kr
문의전화	· LH콜센터 : ☎ 1600-1004	· 공단콜센터 : ☎ 1588-4321
문의내용	· 공급금액, 전매제한/재당첨 제한기간 ·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 선정순위

2020. 03. 13.

공 무 원 연 금 공 단